

1.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간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고소가 있어야만 범인을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여기서 부녀란 기혼, 미혼, 성년, 미성년을 묻지 아니한다. 부녀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매춘부이거나 행위자와 성관계를 맺고 있던 자이거나 불문한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최면을 거는 것도 여기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간음의 종료 이전에 행하여져야 한다. 강간 중에 여자가 성적으로 흥분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이며 여자가 호텔 객실까지는 순순히 들어갔더라도 항거 불능의 상태에서 성행위를 당하게 되면 역시 강간이 된다. 또한 부녀의 반항 의사는 간음 시에도 존재할 것을 요한다. 다만 부녀자가 현실적으로 반항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일부라도 삽입되면 본죄가 성립되며, 완전 삽입이나 사정을 요하지 않는다. 또 성기끼리의 접촉이나, 남성의 성기가 아닌 유사물을 여성 성기에 삽입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뿐이다.

2. 강간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범할 수 있다. 동성간에도 성립이 가능하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추행이란 건전한 상식의 일반인으로서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비정상적인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란 개인적 업무와 공적 업무를 포함하며, 고용이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를 말하며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란 고용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를 말한다.

4. 간통죄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며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 (혼인 신고한 배우자)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결혼 생활을 하는 자는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률상의 배우자인 이상 사실상의 동거가 없어도 관계가 없다. 형법 제241조 2항 단서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용은 사전의 동의이고 유서는 사후의 동의인데 이러한 동의에 의하여 고소권의 발생이 저지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여 고소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였다면 그 고소는 효력이 없고, 그 고소에 기인한 공소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5. 낙태죄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인위적으로 모체 외로 배출하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죄이다. 태아가 생기게 된 원인이 간통 및 하간 어는 경우이든 상관없다. 단 강간에 의한 낙태는 예외이다. 성관계 자체는 강간·간통이 아닌 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낙태 수술 등으로 낙태하였을 경우, 의사는 낙태죄의 공범이 된다. 낙태 행위도 모자보건법상·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 견지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일반적 요건

의사에 의해서 수술이 행하여져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로 충분하다.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나. 개별적 요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